인천 청라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A-31BL, A-39BL, A-26BL A-38BL, A-33BL]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인접학교 외(중 · 고등학교는 서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 포함)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

인천 청라지구 A-31BL 청라 SK VIEW SK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952호 (2009. 5. 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31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4~30층 9개동 총 879세대[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7세대, 3자녀 특별공급 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공동주택 57,608.9453㎡, 근린생활시설 622.0547㎡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 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경제자유 구역	3자녀 특별공급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57-01	2009000295 (01)	**101.5882**	101.5882	25.4326	127.0208	65.3937	192.4145	58.0760	192	4	6	182	127.0208
	22157-02	2009000295 (02)	**101.6409**	101.6409	29.5967	131.2376	65.4275	196.6651	58.1061	92	2	3	87	131.2376
	22157-03	2009000295 (03)	**115.0253**	115.0253	31.5417	146.5670	74.0433	220.6103	65.7577	200	4	6	190	146.5670
	22157-04	2009000295 (04)	**114.3812**	114.3812	32.1056	146.4868	73.6287	220.1155	65.3895	84	1	2	81	146.4868
	22157-05	2009000295 (05)	**116.8673**	116.8673	35.1505	152.0178	75.2291	227.2469	66.8107	44	1	1	42	152.0178
	22157-06	2009000295 (06)	**125.4899**	125.4899	33.4059	158.8958	80.7795	239.6753	71.7401	90	2	3	85	158.8958
	22157-07	2009000295 (07)	**126.7750**	126.7750	34.4762	161.2512	81.6068	242.8580	72.4748	90	2	3	85	161.2512
	22157-08	2009000295 (08)	**128.7778**	128.7778	32.9747	161.7525	82.8960	244.6485	73.6197	84	1	2	81	161.7525
	22157-09	2009000295 (09)	**212.9522**	212.9522	59.8446	272.7968	137.0803	409.8771	121.7406	3	0	0	3	272.7968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단 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09.10.16	2회(10%) 2010.02.16	3회(10%) 2010.06.16	4회(10%) 2010.12.16	5회(10%) 2011.04.18	6회(10%) 2011.08.16	입주시
101.5882	4	1층	178,193,541	183,206,459	**361,40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108,420,000
	4	2층	178,193,541	201,906,459	**380,10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114,030,000
	8	3층	178,193,541	216,506,459	**394,70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118,410,000
	8	4층	178,193,541	233,106,459	**411,30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123,390,000
	8	5층	178,193,541	237,206,459	**415,40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124,620,000
	160	6층 이상	178,193,541	241,406,459	**419,60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101.6409	2	1층	178,285,981	195,214,019	**373,50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112,050,000
	2	2층	178,285,981	214,514,019	**392,80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4	3층	178,285,981	229,514,019	**407,80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122,340,000
	4	4층	178,285,981	246,714,019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4	5층	178,285,981	251,014,019	**429,30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128,790,000
	76	6층 이상	178,285,981	255,214,019	**433,5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130,050,000
115.0253	8	1층	201,763,251	215,336,749	**417,10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125,130,000
	8	2층	201,763,251	236,936,749	**438,70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131,610,000
	8	3층	201,763,251	253,736,749	**455,50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136,650,000
	8	4층	201,763,251	272,936,749	**474,70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142,410,000
	8	5층	201,763,251	277,736,749	**479,50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143,850,000
	160	6층 이상	201,763,251	282,436,749	**484,20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145,260,000
114.3812	3	3층	200,633,450	254,566,550	**455,20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136,560,000
	3	4층	200,633,450	273,666,550	**474,30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3	5층	200,633,450	278,466,550	**479,10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143,730,000
	75	6층 이상	200,633,450	283,266,550	**483,90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145,170,000
116.8673	2	3층	204,994,261	267,405,739	**472,40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41,720,000
	2	4층	204,994,261	287,305,739	**492,30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147,690,000
	2	5층	204,994,261	292,305,739	**497,30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49,190,000
	38	6층 이상	204,994,261	297,205,739	**502,20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150,660,000
125.4899	2	1층	220,118,967	241,981,033	**462,10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138,630,000
	2	2층	220,118,967	265,881,033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	3층	220,118,967	284,381,033	**504,50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151,350,000
	2	4층	220,118,967	305,681,033	**525,80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157,740,000
	2	5층	220,118,967	310,981,033	**531,10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159,330,000
	50	6층 이상	220,118,967	316,281,033	**536,40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160,920,000
	1	1층	220,118,967	244,681,033	**464,80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139,440,000
	1	2층	220,118,967	268,681,033	**488,80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146,640,000
	1	3층	220,118,967	287,381,033	**507,50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152,250,000
	1	4층	220,118,967	308,781,033	**528,90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158,670,000
	1	5층	220,118,967	314,181,033	**534,30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160,290,000
	25	6층 이상	220,118,967	319,481,033	**539,60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161,880,000
126.775	3	1층	222,373,132	256,726,868	**479,10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143,730,000
	3	2층	222,373,132	281,526,868	**503,90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151,170,000
	3	3층	222,373,132	300,826,868	**523,20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156,960,000
	3	4층	222,373,132	322,826,868	**545,20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163,560,000
	3	5층	222,373,132	328,326,868	**550,70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65,210,000
	75	6층 이상	222,373,132	333,826,868	**556,20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166,860,000
128.7778	3	1층	225,886,197	254,713,803	**480,60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144,180,000
	3	2층	225,886,197	279,513,803	**505,40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151,620,000
	3	3층	225,886,197	298,913,803	**524,80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157,440,000
	3	4층	225,886,197	321,013,803	**546,90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164,070,000
	3	5층	225,886,197	326,513,803	**552,40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165,720,000
	69	6층 이상	225,886,197	332,013,803	**557,90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167,370,000
212.9522	3	29층	373,534,590	567,265,410	**940,80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282,240,000

인천 청라지구 A-39BL 동양엔파트 동양메이저/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953호 (2009. 5. 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39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5~30층 6개동 총 564세대[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2세대, 3자녀 특별공급 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공동주택 37,636.20㎡, 근린생활시설 328.80 ㎡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 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경제자유 구역	3자녀 특별공급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60-01	2009000292 (01)	**118.8350A**	118.8352	28.6067	147.4419	62.0232	214.5567	66.8091	85	2	3	80	147.4419
	22160-02	2009000292 (02)	**118.8350B**	118.8352	28.2387	147.0739	67.1448	214.2187	66.8091	90	2	3	85	147.0739
	22160-03	2009000292 (03)	**118.8376**	118.8376	28.1200	146.9576	67.1461	214.1037	66.8105	150	3	5	142	146.9576
	22160-04	2009000292 (04)	**118.3699**	118.3699	28.4131	146.7830	66.8819	213.6649	66.5475	82	2	3	77	146.7830
	22160-05	2009000292 (05)	**118.3573**	118.3573	29.1424	147.4997	66.8747	214.3744	66.5404	88	2	3	83	147.4997
	22160-06	2009000292 (06)	**118.8538**	118.8538	29.2128	148.0666	67.1554	215.2220	66.8196	69	1	2	66	148.0666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단 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동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09.11.22	2회(10%) 2010.04.22	3회(10%) 2010.09.22	4회(10%) 2011.04.22	5회(10%) 2011.09.22	6회(10%) 2012.02.22	입주시
118.8350A	85	3	104동 105동 106동	1층	210,080,112	227,919,888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3		2층	210,080,112	258,119,888	**468,20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9		3층~5층	210,080,112	275,319,888	**485,400,000**	48,540,000	48,540,000	48,540,000	48,540,000	48,540,000	48,540,000	48,540,000	145,620,000
		12		6층~9층	210,080,112	277,719,888	**487,80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146,340,000
		58		10층이상	210,080,112	280,219,888	**490,30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49,030,000	147,090,000
118.8350B	90	3	104동 105동 106동	1층	210,080,112	226,919,888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3		2층	210,080,112	256,919,888	**467,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9		3층~5층	210,080,112	274,119,888	**484,20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145,260,000
		12		6층~9층	210,080,112	276,519,888	**486,60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145,980,000
		63		10층이상	210,080,112	279,019,888	**489,10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146,730,000
118.8376	150	6	101동 102동 103동	1층	210,084,355	227,215,645	**437,30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131,190,000
		6		2층	210,084,355	256,615,645	**466,70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46,670,000	140,010,000
		18		3층~5층	210,084,355	273,715,645	**483,800,000**	48,380,000	48,380,000	48,380,000	48,380,000	48,380,000	48,380,000	48,380,000	145,140,000
		24		6층~9층	210,084,355	276,115,645	**486,20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48,620,000	145,860,000
		96		10층이상	210,084,355	278,615,645	**488,70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146,610,000
118.3699	82	8	104동 105동 106동	3층~5층	209,257,542	273,942,458	**483,20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144,960,000
		11		6층~9층	209,257,542	276,342,458	**485,60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145,680,000
		63		10층이상	209,257,542	278,842,458	**488,10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146,430,000
118.3573	88	3	104동 105동 106동	1층	209,235,268	229,764,732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		2층	209,235,268	260,764,732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9		3층~5층	209,235,268	276,364,732	**485,60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48,560,000	145,680,000
		12		6층~9층	209,235,268	278,764,732	**488,0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61		10층이상	209,235,268	281,264,732	**490,50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49,050,000	147,150,000
118.8538	69	9	101동 102동 103동	3층~5층	210,112,994	274,887,006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12		6층~9층	210,112,994	279,787,006	**489,90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146,970,000
		48		10층이상	210,112,994	282,287,006	**492,40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147,720,000

인천 청라지구 A-26BL 동양엔파트 동양메이저/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954호 (2009. 5. 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26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3~15층 5개동 총 256세대[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6세대, 3자녀 특별공급 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공동주택 25,200.00㎡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 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경제자유 구역	3자녀 특별공급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59-01	2009000291 (01)	**117.9420A**	117.9428	27.8677	145.8105	63.4923	209.2398	98.4422	15	1	1	13	145.8105
	22159-02	2009000291 (02)	**117.9420B**	117.9428	29.2420	147.1848	63.4923	210.6141	98.4422	15	1	1	13	147.1848
	22159-03	2009000291 (03)	**117.9506**	117.9506	28.1518	146.1024	63.4334	209.5358	98.4488	60	1	2	57	146.1024
	22159-04	2009000291 (04)	**117.7544**	117.7544	27.9058	145.6602	63.3279	208.9881	98.2850	14	0	0	14	145.6602
	22159-05	2009000291 (05)	**117.8648**	117.8648	30.3778	148.2426	63.3873	211.6299	98.3771	14	0	0	14	148.2426
	22159-06	2009000291 (06)	**118.1682**	118.1682	29.0732	147.2414	63.5504	210.7918	98.6304	28	1	1	26	147.2414
	22159-07	2009000291 (07)	**117.9017**	117.9017	29.7192	147.6209	63.4072	211.0281	98.4079	110	2	3	105	147.6209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단 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동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09.09.22	2회(10%) 2009.12.22	3회(10%) 2010.03.22	4회(10%) 2010.09.22	5회(10%) 2010.12.22	6회(10%) 2011.03.22	입주시
117.9420A	15	1	102동	1층	217,628,867	212,371,133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		2층	217,628,867	227,071,133	**444,70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44,470,000	133,410,000
		2		3층~4층	217,628,867	263,571,133	**481,200,000**	48,120,000	48,120,000	48,120,000	48,120,000	48,120,000	48,120,000	48,120,000	144,360,000
		11		5층이상	217,628,867	268,371,133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17.9420B	15	1	102동	1층	217,628,867	216,371,133	**434,0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1		2층	217,628,867	232,371,133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2		3층~4층	217,628,867	268,071,133	**485,70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145,710,000
		11		5층이상	217,628,867	272,971,133	**490,60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147,180,000
117.9506	60	4	101동 103동	1층	217,643,259	213,056,741	**430,70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129,210,000
		4		2층	217,643,259	228,356,741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8		3층~4층	217,643,259	264,456,741	**482,10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48,210,000	144,630,000
		44		5층이상	217,643,259	269,356,741	**487,0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117.7544	14	1	102동	2층	217,281,230	227,018,770	**444,30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2		3층~4층	217,281,230	263,718,770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11		5층이상	217,281,230	268,218,770	**485,50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48,550,000	145,650,000
117.8648	14	1	102동	2층	217,484,941	234,715,059	**452,20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135,660,000
		2		3층~4층	217,484,941	271,715,059	**489,20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48,920,000	146,760,000
		11		5층이상	217,484,941	276,615,059	**494,100,000**	49,410,000	49,410,000	49,410,000	49,410,000	49,410,000	49,410,000	49,410,000	148,230,000
118.1682	28	2	101동 103동	2층	218,044,776	231,055,224	**449,10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134,730,000
		4		3층~4층	218,044,776	267,955,224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2		5층이상	218,044,776	272,955,224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117.9017	110	4	104동 105동	1층	217,553,029	223,746,971	**441,30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132,390,000
		8		2층	217,553,029	238,946,971	**456,50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136,950,000
		16		3층~4층	217,553,029	276,346,971	**493,90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148,170,000
		82		5층이상	217,553,029	281,346,971	**498,90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149,670,000

인천 청라지구 A-38BL 한양수자인 한 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949호 (2009. 5. 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38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4~30층 6개동 총 566세대[3자녀 특별공급 17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공동주택 38,259.48㎡, 근린생활시설 649.52㎡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 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경제자유 구역	3자녀 특별공급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55-01	2009000290 (01)	**102.5591**	102.5591	26.5792	129.1383	54.4745	183.6128	57.6500	138	3	4	131	129.1383
	22155-02	2009000290 (02)	**120.2070**	120.2070	30.2006	150.4076	63.8487	214.2563	67.5702	192	4	6	182	150.4076
	22155-03	2009000290 (03)	**121.4440A**	121.4449	31.8920	153.3369	64.5057	217.8426	68.2660	108	2	3	103	153.3369
	22155-04	2009000290 (04)	**121.4440B**	121.4449	31.8920	153.3369	64.5062	217.8431	68.2660	27	0	1	26	153.3369
	22155-05	2009000290 (05)	**142.9240A**	142.9247	32.7728	175.6975	75.9156	251.6131	80.3402	96	2	3	91	175.6975
	22155-06	2009000290 (06)	**142.9240B**	142.9247	32.7728	175.6975	75.9156	251.6131	80.3402	5	0	0	5	175.6975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단 위 : ㎡/천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09.10.12	2회(10%) 2010.03.10	3회(10%) 2010.08.10	4회(10%) 2011.01.10	5회(10%) 2011.05.11	6회(10%) 2011.09.14	입주시
102.5591	138	3	1층	182,102	202,898	**385,0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115,500
		3	2층		215,898	**398,0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119,400
		18	3~5층		232,898	**415,0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124,500
		114	기준층		245,898	**428,0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128,400
120.2070	192	5	1층	213,438	234,562	**448,000**	44,800	44,800	44,800	44,800	44,800	44,800	44,800	134,400
		5	2층		249,562	**463,000**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138,900
		24	3~5층		268,562	**482,000**	48,200	48,200	48,200	48,200	48,200	48,200	48,200	144,600
		158	기준층		284,562	**498,0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149,400
121.4440A	108	2	1층	215,636	241,364	**457,0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137,100
		2	2층		256,364	**472,0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12	3~5층		276,364	**492,0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147,600
		92	기준층		292,364	**508,0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152,400
121.4440B	27	1	1층	215,636	241,364	**457,0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45,700	137,100
		1	2층		256,364	**472,0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3	3~5층		276,364	**492,0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147,600
		22	기준층		292,364	**508,0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152,400
142.9240A	96	2	1층	253,775	268,225	**522,0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156,600
		2	2층		287,225	**541,0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162,300
		12	3~5층		310,225	**564,0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169,200
		80	기준층		327,225	**581,0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174,300
142.9240B	5	5	기준층	253,775	327,225	**581,0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174,300

인천 청라지구 A-33BL 반도유보라 반도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6950호 (2009. 05. 2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33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총 174세대[3자녀 특별공급 5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16,835.000㎡(공동주택 16,602.9476㎡, 근린생활시설 232.0524㎡)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 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경제자유 구역	3자녀 특별공급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58-01	2009000294 (01)	**101.9570**	101.9570	24.7221	126.6791	6.7231	52.7791	186.1813	85.4293	30	1	1	28	126.6791
	22158-02	2009000294 (02)	**101.9597**	101.9597	25.6047	127.5644	6.7232	52.7805	187.0681	85.4316	58	1	2	55	127.5644
	22158-03	2009000294 (03)	**126.0777**	126.0777	29.2060	155.2837	8.3131	65.2661	228.8629	105.6400	86	2	2	82	155.2060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단 위 : ㎡/천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5%) 계약시	2회(5%) 2009.07.15	1회(10%) 2009.09.15	2회(10%) 2010.01.15	3회(10%) 2010.06.15	4회(10%) 2010.11.15	5회(10%) 2011.03.15	6회(10%) 2011.07.15	입주시
101.9570	30	4	1층~2층	182,203	211,297	**393,500**	19,675	19,675	39,350	39,350	39,350	39,350	39,350	39,350	118,050
		2	3층	182,203	224,497	**406,700**	20,335	20,335	40,670	40,670	40,670	40,670	40,670	40,670	122,010
		2	4층	182,203	233,397	**415,600**	20,780	20,780	41,560	41,560	41,560	41,560	41,560	41,560	124,680
		2	5층	182,203	242,197	**424,400**	21,220	21,220	42,440	42,440	42,440	42,440	42,440	42,440	127,320
		2	6층	182,203	251,097	**433,300**	21,665	21,665	43,330	43,330	43,330	43,330	43,330	43,330	129,990
		18	7층이상	182,203	259,897	**442,100**	22,105	22,105	44,210	44,210	44,210	44,210	44,210	44,210	132,630
101.9597	58	6	1층~2층	182,208	202,292	**384,500**	19,225	19,225	38,450	38,450	38,450	38,450	38,450	38,450	115,350
		4	3층	182,208	215,492	**397,700**	19,885	19,885	39,770	39,770	39,770	39,770	39,770	39,770	119,310
		4	4층	182,208	224,092	**406,300**	20,315	20,315	40,630	40,630	40,630	40,630	40,630	40,630	121,890
		4	5층	182,208	232,692	**414,900**	20,745	20,745	41,490	41,490	41,490	41,490	41,490	41,490	124,470
		4	6층	182,208	241,392	**423,600**	21,180	21,180	42,360	42,360	42,360	42,360	42,360	42,360	127,080
		36	7층이상	182,208	249,992	**432,200**	21,610	21,610	43,220	43,220	43,220	43,220	43,220	43,220	129,660
126.0777	86	8	1층~2층	225,308	235,492	**460,800**	23,040	23,040	46,080	46,080	46,080	46,080	46,080	46,080	138,240
		6	3층	225,308	250,992	**476,300**	23,815	23,815	47,630	47,630	47,630	47,630	47,630	47,630	142,890
		6	4층	225,308	261,392	**486,700**	24,335	24,335	48,670	48,670	48,670	48,670	48,670	48,670	146,010
		6	5층	225,308	271,692	**497,000**	24,850	24,850	49,700	49,700	49,700	49,700	49,700	49,700	149,100
		6	6층	225,308	282,092	**507,400**	25,370	25,370	50,740	50,740	50,740	50,740	50,740	50,740	152,220
		54	7층이상	225,308	292,492	**517,800**	25,890	25,890	51,780	51,780	51,780	51,780	51,780	51,780	155,340

— 이하 내용은 공통사항임 —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각사에서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SK건설은 향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안내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발코니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부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아파트는 전용 85㎡초과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최초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금지)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적용이 유예)에 유의(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0:00~15:00) / 각사 견본주택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2.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5:30) / 각사 견본주택(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나 혹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SK건설(A-31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계
세 대 수	4	2	4	1	1	2	2	1	0	17

【동양메이저/건설(A-39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8.8350A	118.8350B	118.8376	118.3699	118.3573	118.8538	계
세 대 수	2	2	3	2	2	1	12

【동양메이저/건설(A-26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7.9420A	117.9420B	117.9506	117.7544	117.8648	118.1682	117.9017	계
세 대 수	1	1	1	0	0	1	2	6

【한 양(A-38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2.5591	120.2070	121.4440A	121.4440B	142.9240A	142.9240B	계
세 대 수	3	4	2	0	2	0	11

【반도건설(A-33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9570	101.9597	126.0777	계
세 대 수	1	1	2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07-292호, 2007. 11. 9)의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당해지구 소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 불포함)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1년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세대 유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9조 입주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전출, 퇴직 등)한 자는 분양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함.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청약접수자는 청약접수 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주택특별공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되므로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추첨 당첨자는 본 입주자 모집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하고, 동호수 추첨일 이후 당사에서 당첨자의 청약접수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추천서를 요청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해서 추천서를 발급하며, 추천서를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동호수 추첨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을 경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외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여권 및 비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이상) • 재직증명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 · 초본(주소이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이상)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 3자녀 특별공급 [건설량의 3% 범위 내]

- 3자녀 특별공급세대

【SK건설(A-31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3	1	3	1	0	2	2	1	0	13
	경기도 및 서울시	3	2	3	1	1	1	1	1	0	13
	합 계	6	3	6	2	1	3	3	2	0	26

【동양메이저/건설(A-39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8.8350A	118.8350B	118.8376	118.3699	118.3573	118.8538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2	2	3	2	2	1	12
	경기도 및 서울시	1	1	2	1	1	1	7
	합 계	3	3	5	3	3	2	19

【동양메이저/건설(A-26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7.9420A	117.9420B	117.9506	117.7544	117.8648	118.1682	117.9017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0	0	1	0	0	1	2	4
	경기도 및 서울시	1	1	1	0	0	0	1	4
	합 계	1	1	2	0	0	1	3	8

【(주)한 양(A-38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2.5591	120.2070	121.4440A	121.4440B	142.9240A	142.9240B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2	3	2	1	1	0	9
	경기도	1	2	0	0	1	0	4
	서울특별시	1	1	1	0	1	0	4
	합 계	4	6	3	1	3	0	17

【반도건설(A-33BL)】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9570	101.9597	126.0777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1	1	1	3
	경기도	0	1	1	2
	서울특별시	0	0	0	0
	합 계	1	2	2	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26%,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24%로 공급합니다.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0:00~15:00) / 각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5:30) / 각사 견본주택(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배 점 표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	-	
자녀수 (1)	미성년 자 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 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 주택에 비치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5. 29)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중이라도 2009. 4. 1~2011. 3. 31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신 청 자 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인천 광역시 / 서울 특별시 / 경기도	2009. 06.03 (수)	• 접수장소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 17:30	■ SK건설 • 일시 : 2009. 06. 11(목) • 장소 : 견본주택, 헤럴드경제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 한양 • 일시 : 2009. 06. 12(금) • 장소 : 견본주택, 문화일보 및 분양홈페이지 ■ 동양메이저/건설, 반도건설 • 일시 : 2009. 06. 12(금) • 장소 : 견본주택, 헤럴드경제 및 분양홈페이지
		추첨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감점은 적용됨				
		공 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순위	가점제/ 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9. 06.04 (목)		
		공 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공 통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9. 06.05 (금)	• 접수장소 – SK건설 : 국민은행 인터넷 – 동양메이저/건설 : 우리은행 본 · 지점 – 한양 : 농협중앙회 본 · 지점 – 반도건설 : 하나은행 본 · 지점 • 접수시간 – SK건설 08:00~17:30 –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09:00~16:00	※당첨자 명단은 상기 매체 및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청약신정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구 분	기타광역시(인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초과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6)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7)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접수방법

1)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1, 2순위 –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합니다.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됩니다.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접수방법

【SK건설(A-31BL)】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 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신 분으로 국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양(A-38BL), 반도건설(A-33BL)】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3) 노약자 · 장애우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SK건설–국민은행, 동양메이저/건설–우리은행, 한양–농협중앙회, 반도건설–하나은행 비치) • 청약예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은행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순위자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구분(주택형)	전 세 대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창구청약자에 한함)

- 환불방법
  - 환 불 기 간 : 당첨자 발표후 익영업일[SK건설 : 2009. 06. 12(금),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 2009. 06. 15(월)] 이후 부터 (평일 : 09:00 ~ 16:00, 토, 일요일 : 제외)
  - 환 불 장 소 :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됩니다.)
  -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 ·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합니다.)
·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우리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SK건설은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비 사 항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당첨확인
	이용기간	SK건설 : 2009. 06. 11 ~ 2009. 06. 20(10일간),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 2009. 06. 12 ~ 2009. 06. 21(10일간)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청약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전국금융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SK건설 : 2009. 06. 11 ~ 2009. 06. 20(10일간),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 2009. 06. 12 ~ 2009. 06. 21(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SK건설 : 2009. 06. 11 08:30,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 2009. 06. 12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SK건설 : 2009. 06. 16(화) ~ 2009. 06. 18(목) (3일간, 09:00~1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키로 함)
  - 동양메이저/건설, 한양, 반도건설 : 2009. 06. 18(목) ~ 2009. 06. 19(금), 2009. 06. 22(월) (3일간, 09:00~1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키로 함)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각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전화

구 분	SK건설(A-31BL)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 양(A-38BL)	반도건설(A-33BL)
견본주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8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8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8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문의전화	1577-9880	032-888-0000	032-888-0000	1588-3465	032-888-1611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SK건설(A-31BL)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 양(A-38BL)	반도건설(A-33BL)
은 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납부계좌	393301-04-002042	1005-501-457589	1005-801-456982	1773-17-000410	164-910032-95404
예 금 주	KB부동산 신탁(주)	아시아신탁(주)	한국자산신탁(주)	보성건설(주)	(주)반도종합건설

- 납부시기 :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합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출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합니다.

■ 입주자 융자지원 내용

- 본 아파트는 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금2차부터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구 분	SK건설(A-31BL)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 양(A-38BL)	반도건설(A-33BL)
융자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비 고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고지함				

- 중도금대출 및 중도금대출 연계 모기지론 이용시 발생하는 인지대 · 보증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예정일(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구 분	SK건설(A-31BL)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 양(A-38BL)	반도건설(A-33BL)
입주예정일	2012년 1월	2012년 8월	2011년 8월	2012년 1월	2011년 10월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 각사는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여부를 사전점검 하시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이전에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비 고 :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 제5항 ·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 「60㎡이 하 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초 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장기간 보유 특례)
  ①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SK건설은 해당없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합니다.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SK건설(A-31BL)】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발코니 내부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침실붙박이장, 드레스룸장(도어포함), 발코니선반류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 기구류 (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바디샤워기, 수전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액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 액정TV,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빌트인냉장냉동고, 리프트업도어(101.5882, 101.6409형 미설치), 주방가전 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배기덕트

【동양메이저/건설(A-39BL)】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목창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문선),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폴리싱타일, 현관 바닥타일 및 천연대리석 디딤판/걸레받이 등 일체), 발코니 바닥타일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및 아트월(거실/복도), 발코니 벽도장	콘크리트 벽체 면처리 마감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마감, 발코니 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정재 및 벽/바닥 타일, 대리석공사(벽체, 선반등),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등), 비데, 샤워부스, 욕실엑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아일랜드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및 기기(가스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후드,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정수기 등), 설비수전류, 벽타일(C평형 인조대리석 및 백페인트글라스 포함)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장(신발장, 낮은장 등), 붙박이장, 시스템가구(창고, 드레스룸), 드레스룸도어, 화장대(거울 및 상판포함), 세탁실 선반	

【동양메이저/건설(A-26BL)】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목창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문선),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폴리싱타일, 현관 바닥타일 및 천연대리석 디딤판/걸레받이 등 일체), 발코니바닥타일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및 아트월(거실/복도), 발코니 벽도장	콘크리트 벽체 면처리 마감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마감, 발코니 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정재 및 벽/바닥 타일, 대리석공사(벽체, 선반등),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등), 비데, 샤워부스, 욕실엑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아일랜드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및 기기(가스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후드,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정수기 등),설비수전류, 벽타일(C평형 인조대리석 및 백페인트글라스 포함)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장(신발장, 낮은장 등), 붙박이장, 시스템가구(창고, 드레스룸), 드레스룸도어, 화장대(거울 및 상판포함), 세탁실 선반	

【한 양(A-38BL)】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Ⅰ	바닥재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 안방, 침실, 주방 · 식당 / 비닐륨(걸레받이 포함) – 침실, 안방, 현관 및 발코니바닥(석재, 타일포함)	바닥난방, 발코니 방수, 바닥미장
	벽, 천정마감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타일, 래핑, 패브릭알판 등), 우물천장, 주방벽 타일, 몰딩	천장재(경량 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
Ⅱ	조명기구외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월패드	홈네트워크시스템 배관, 배선(스위치)
Ⅲ	욕실	타일 및 석재(바닥,벽,젠다이,세족대,세면대 상판 등), 욕실상하부장,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욕조하부조적 및 부자재, 코킹, 부부욕실 비상콜버튼, 욕실천장	방수(바닥, 벽체)
		욕조, 양변기, 세면대, 수전류, 악세서리류, 비데, 해바라기수전	설비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바닥미장
Ⅳ	주방가구	주방가구(아일랜드식탁, 키큰장,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싱크볼, 렌지후드, 가스오븐레인지, 주방액정TV, 1구 전기호브(120㎡이 상), 식기세척기(120㎡이 상), 와인냉장고(142㎡), 빌트인 냉장냉동고(142㎡), 전동빨래건조대	
		주방수전, 세제디스펜서, 절수패달,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개별정수기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Ⅴ	가구	신발장, 침실붙박이장, 드레스룸장, 화장대(상판 및 벽체 대리석 포함), 수납장, 세탁실 선반, 시스템가구, 현관창고장	
Ⅵ	창호	목창호 및 하드웨어(도어록 및 정첩 외) / 디지털 도어록	PVC발코니 내부창호, 현관방화문, 발코니면한 목창호, 대피공간 방화문
Ⅶ	가변형 벽체	가변형 벽체, 벽지, 걸레받이	

【반도건설(A-33BL)】

품 목	적 용 범 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각실 · 거실 · 주방 · 현관	바닥마감재(온돌마루/ 타일)	바닥난방+시멘트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각실 · 거실 · 주방 · 현관	벽지, 거실아트월 및 판넬,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부위)
3) 천정	각실 · 거실 · 주방 · 현관	천정지(욕실), 반자돌림,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정틀위 석고보드
4) 조명기구	각실 · 거실 · 주방 · 현관	부착형 조명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5) 욕실	공용 · 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타일, 엑세서리, 수전, 욕실장, 비데, 샤워부스	액체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6) 주방	주 방	전주택형 공통 : 상부장, 하부장(상판포함), 수납장, 액세서리, 타일 렌지후드, 수전, 주방TV,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야채세척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 · 배수, 난방)
7) 문	각실 출입문	각방 (드레스룸) 문틀 및 문짝, 도어록	현관문, 대피공간문, 욕실문틀, 하부씰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SK건설(A-31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3,797,000	24,587,000	27,041,000	27,026,000	28,047,000	28,791,000	29,218,000	29,309,000	49,430,000	

【동양메이저/건설(A-39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18.8350A	118.8350B	118.8376	118.3699	118.3573	118.8538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7,202,000	27,135,000	27,113,000	27,081,000	27,213,000	27,318,000	

【동양메이저/건설(A-26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17.9420A	117.9420B	117.9506	117.7544	117.8648	118.1682	117.9017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6,398,000	26,647,000	26,451,000	26,371,000	26,839,000	26,658,000	26,726,000	

【한 양(A-38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2.5591	120.2070	121.4440A	121.4440B	142.9240A	142.9240B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4,194,000	27,750,000	28,290,000	28,290,000	31,836,000	31,836,000	

【반도건설(A-33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9570	101.9597	126.0777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23,277,000	23,439,000	27,624,000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 (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온돌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SK건설(A-31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비 고
발코니확장공사비	8,965,000	10,376,000	10,651,000	10,928,000	10,619,000	11,460,000	13,714,000	12,613,000	10,725,000	

【동양메이저/건설(A-39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8.8350A	118.8350B	118.8376	118.3699	118.3573	118.8538	비 고
발코니확장공사비	12,514,000	12,514,000	12,514,000	9,715,000	11,437,000	11,673,000	

【동양메이저/건설(A-26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17.9420A	117.9420B	117.9506	117.7544	117.8648	118.1682	117.9017	비 고
발코니확장공사비	12,768,000	12,768,000	12,768,000	9,769,000	11,328,000	11,745,000	12,541,000	

【한 양(A-38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2.5591	120.2070	121.4440A	121.4440B	142.9240A	142.9240B	비 고
발코니확장공사비	9,400,000	11,300,000	10,200,000	10,200,000	12,500,000	12,500,000	

【반도건설(A-33BL)】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101.9570	101.9597	126.0777	비 고
발코니확장공사비	11,453,000	10,285,000	12,098,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감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비용은 발코니 샤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확장부분에는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한양만 해당)

■ 유의사항 [SK건설(A-31BL)]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의 [주택형] 또는 [형]란 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 택 형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신청착오로 인한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3순위 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자 본인이 2건 이상 청약 시 이중 청약 처리되어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계약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가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과 견본주택(실물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시공제품은 계약자용 인쇄물(카탈로그)과 견본주택(실물세대)을 기준으로 하되 실물세대 내에 시공된 제품은 실제 시공 시 동급(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의 조감도, 사진 및 이미지 그림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 품목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분양금액은 ㎡당 분양가격에 의거 잔금 납부 시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증감면적이 계약면적의 2%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업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코어(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창 등) 형태는 주동의 위치 및 주동타입에 따라 채광 및 복도 크기 등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상 세대 전 · 후면에는 주동 출입구 경사로,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투입구,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고, 이에 대한 주변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 및 일조권,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배기구,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외부 입면은 발코니 부위에 입면 장식물이 부착되므로 모델하우스의 모형 및 이미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 약 1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정확한 사전 점검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 공급면적의 변경이 없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 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 등이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 및 확장부위 창호는 층수 및 향에 의한 풍압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풍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 제시형태와 다르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열림 방향이 변경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환기시스템(장비)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입면, 창호, 환기구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주거전용면적)형의 거실 코너부위는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상부의 옥상녹화 부분은 건축심의 의결조건으로서 추후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 주차공간 분배는 입주자회의에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청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출입구는 남측과 서측에 계획되어 있고 동측은 완충녹지입니다.
- 101동, 102동 ,103동의 16층, 21층, 26층의 엘리베이터홀에는 화재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1층부터 28층까지의 128.7778㎡(주거전용면적)형 거실 발코니 창호는 건축심의 의결조건으로서 외부 난간 없이 시스템창이 기본 설치되며, 확장시에도 동일한 시스템 창이 설치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민운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평면,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부색채 등 외부입면계획은 건축심의에 따른 것으로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추가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 번호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동 번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라인의 경우 타워형 배치로 인해 일조량이 동일평형의 다른 동에 비해 적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고,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색채, 재질, 간판, 조경, 설치위치는 인 · 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상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구조방식이나 기초 및 구조물의 형식 등은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계약 시 모델하우스 및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 주동 입면 및 색채, 조경, 경관부분에서 추후 토지공사의 경관상세계획에 의거 공사 중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평면구조의 가변성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어, 세대내 실간벽체는 경량벽체, 발코니-실간분할벽은 조적벽으로 시공되오니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교통시설물 및 계획안은 블록별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지구전체 교통영향평가 내용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조경 수목의 수량, 수종, 각종 시설물, 포장 등은 향후 계획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동측 호수공원은 토지공사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이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안 및 착공, 준공일정은 토지공사에 문의)
- 청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대지 북서/북동측 가각부 공개공지, 북측에 동서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델하우스 내 모형 및 배치도에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내에 자동크린넷 쓰레기집하장, 보도육교, 오수중계펌프장, 종교시설, 주유소, 수질정화시설, 전기공급설비(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시행), 열공급설비(지역난방, 청라에너지㈜ 시행)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인천도시가스㈜ 시행)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라지구 인접지역에 각종 유해시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홍보카다록,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자체,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시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세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동측 완충녹지지역의 식재계획은 해당관청 및 토지공사의 지구단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분양자료(카다로그 CG, 모형)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옥내 주민운동시설, 문고,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비실)은 지하1층(데크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자치실, 북카페, 독서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5동, 108동 인근의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5동과 106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의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지하에 우수저류조가 위치합니다.
- 101동 4호라인, 102동 3,4호라인 전면, 104동 4호라인 측면, 106동 1,2호라인 전면, 107동 1,2호 라인 전면, 109동 2호라인 전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설치됩니다.
- 101동, 103동, 107동 인근에는 D.A가 설치됩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인근에는 천창이 설치됩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106동과 107동 사이에는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전면의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지 내 북측 및 서측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됩니다.

■ 유의사항 [동양메이저/건설(A-39BL),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양(A-38BL), 반도건설(A-33BL)]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 품목임)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 거래불량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3순위 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국토해양부 주관 30415-26905('90.10.15.)에 의거 임의로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비디오 및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신청 착오로 인한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에 따라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변경(위치 및 개소증감)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조망,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공급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색채 등 외부입면계획은 건축심의에 따른 것으로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추가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 약 1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정확한 사전 점검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동 번호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동 번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지에서 완화차선 및 자전거도로는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동 입면 및 색채, 조경, 경관부분에서 추후 토지공사의 경관상세계획에 의거 공사 중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북서측 가각부 공개공지, 남동쪽 가각부 공공조경과 동서 및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델하우스 내 모형 및 배치도에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내에 자동크린넷 쓰레기집하장, 보도육교, 오수중계펌프장, 종교시설, 주유소, 중봉로 및 청라 1,2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주운 수질정화시설, 전기공급설비(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시행), 열공급설비(지역난방, 청라에너지㈜ 시행)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인천도시가스㈜ 시행)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라지구 인접지역에 각 종 유해시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홍보카다록,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자체,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차로는 서비스차량(이사짐, 소방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내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근생 주차장 제외)
-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쓰레기분리수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 부출입구의 지하주차램프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 대피공간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난간턱 규정에 의하여 창호 프레임만큼 난간 또는 턱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층수 및 향에 의한 풍압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풍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 제시형태와 다르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위층세대가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 상부 확장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확장세대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로 인하여 발코니 세대경계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로 발코니 천정마감이 모델하우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세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2순위 당첨자)함.
- 외국인(외국법인)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동양메이저/건설(A-39BL)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관리사무소, 경비실,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노인정, 보육시설,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옥외 체력단련장 2개소)
-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독서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운동시설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라인의 경우 타워형 배치로 인해 일조량이 동일평형의 다른 동에 비해 적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철재안전난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창호 중 상부창호는 18mm 복층유리, 하부창호는 27.76mm 복층유리(안전유리난간)로 설치되고, 내부창호는 18mm 복층유리로 설치됩니다.
- 118.3573(C)㎡, 118.8538(C1)㎡ 발코니 중 거실 모서리 부분의 발코니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01.23)"에 의하여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확장 포함)
- 당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는 한국토지공사의 개발계획도(2006.11월)상 지중화 예정이나 향후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 고가도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수 잇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등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등에 의해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측면, 105동 전면, 106동 후면엔는 관련법규준수를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당해시설 이용자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104동 전면, 105동 후면 및 단지중앙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하여 이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106동 5, 6층에는 일부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한 일부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일부발생될수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 및 경관자문에 의하여 아파트 전면부의 일부세대에 칼라유리가 설치되며 계약 시 칼라유리 설치유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소위원회 심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양메이저/건설(A-26BL)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관리사무소, 경비실,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1개소)
-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운동시설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철재안전난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창호 중 상부창호는 18mm 복층유리, 하부창호는 27.76mm 복층유리(안전유리난간)로 설치되고, 내부창호는 18mm 복층유리로 설치됩니다.
- 117.8648㎡(C), 118.1682㎡(C1) 발코니 중 거실 모서리부분의 발코니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01.23)"에 의하여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 단지외부 북측에는 완충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의 공사계획상 변경될수 있습니다.
- 101동, 105동 전면에는 관련법규준수를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당해시설 이용자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전면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하여 이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 및 경관자문에 의하여 아파트 전면부의 일부세대에 칼라유리가 설치되며 계약 시 칼라유리 설치유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소위원회 심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인접 초 · 중학교 미설립시 학생수용이 가능한 인접초등학교 외(중 · 고등학교는 서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 포함)될 수 있고 청라지구 1-2단계 초등학교 개교시 까지는 입주학생들이 등 · 하교 할 수 있도록 1-1단계 초등학교로 사업주체가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

▶한 양(A-38BL)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등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 · 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1,078대로 세대당 1.9대로 배정되었음. • 단지 외부 서측으로 완충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의 공사계획상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사업주체의 브랜드(수자인)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일부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 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으로 산입되는 초과 발코니가 있으며, 확장선택시에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 미선택시는 발코니 형태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창호를 통한 이삿짐등의 반입을 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을 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하며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샷시 및 인테리어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반도건설(A-33BL)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관리사무소, 경비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옥외 배드민턴장 1개소)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커뮤니티 홀, 주민회의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운동시설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라인의 경우 타워형 배치로 인해 일조량이 동일평형의 다른 동에 비해 적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은 청라지구 경관가이드라인에서 포인트동으로 지정되어 외부 입면이 차별화 되어 있음 • 외부 배드민턴장의 야간조명은 민원소지가 있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의 외부 울타리는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외부 마감재 특화공사는 3층까지만 시공됩니다.
- 103, 104동의 1층세대에 설치되는 테라스는 벽체 및 지붕설치등 개별공사가 불가합니다. • 101.9597㎡의 현관앞 공용홀 공간은 개인전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2동 201호 발코니 외부 조경구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문주 디자인은 단지환경을 고려하여 실제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보행자전용도로 1개소만 설치 예정임) • 101, 102동 전면에 관리동 및 근린신생활시설의 지붕이 아스파트싱글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설계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형은 101.9570㎡(1.6832㎡), 101.9597㎡(0.9545㎡)이며, 이는 전용면적에 산정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인접 초 · 중학교 미설립시 학생수용이 가능한 인접초등학교 외(중 · 고등학교는 서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 포함)될 수 있고 청라지구 1-2단계 초등학교 개교시 까지는 입주학생들이 등 · 하교 할 수 있도록 1-1단계 초등학교로 사업주체가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

■ 주택성능등급 인정 항목별 등급표

【SK건설(A-31BL)】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소 음	경량충격음		4등급	환 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등급	생활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3등급
	화장실소음		2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4등급				
	경계소음		1등급		일조(빛환경)		3등급			공용부분	3등급
구 조	가변성		2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등급	화재 · 소방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4등급								
		공용부분	4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등급			배연 및 피난설비	3등급
	내구성		3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2등급			내화 성능	3등급

【동양메이저/건설(A-39BL)】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소 음	경량충격음		4등급	환 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등급	생활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3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3등급
	화장실소음		2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3등급				
	경계소음		1등급		일조(빛환경)		3등급			공용부분	3등급
구 조	가변성		4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등급	화재 · 소방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4등급								
		공용부분	4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1등급			배연 및 피난설비	3등급
	내구성		3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2등급			내화 성능	3등급

【동양메이저/건설(A-26BL)】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소 음	경량충격음		4등급	환 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등급	생활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3등급
	화장실소음		2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3등급				
	경계소음		2등급		일조(빛환경)		2등급			공용부분	3등급
구 조	가변성		4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등급	화재 · 소방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4등급								
		공용부분	4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1등급			배연 및 피난설비	3등급
	내구성		3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2등급			내화 성능	3등급

【한 양(A-38BL)】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소 음	경량충격음		4등급	환 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등급	생활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3등급
	화장실소음		2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2등급				
	경계소음		2등급		일조(빛환경)		4등급			공용부분	2등급
구 조	가변성		4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등급	화재 · 소방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4등급								
		공용부분	4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1등급			배연 및 피난설비	3등급
	내구성		3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3등급			내화 성능	3등급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2 제 4항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단위 : SK건설, 동양메이저/건설, 반도건설 – 천원, 한양 – 원)

항 목		공 종	금액 SK건설 (A-31BL)	동양메이저/건설 (A-39BL)	동양메이저/건설 (A-26BL)	한 양 (A-38BL)	반도건설 (A-33BL)	비 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37,742,997	87,539,349	40,143,600	91,669,717,995	26,680,941	
		기간이자	9,416,241	6,891,699	3,451,278	7,217,654,974	2,100,735	
		필요적 경비	7,883,437	4,919,602	2,260,098	5,296,790,363	1,504,540	
		그밖의 비용	17,633,921	18,995,642	9,855,299	16,680,166,898	5,124,512	연약지반+흙막이 등 기타
계			**172,676,596**	**118,346,292**	**55,710,275**	**120,864,330,230**	**35,410,728**	
공사비	토 목	토공사	3,103,777	2,589,447	1,170,233	1,841,606,981	739,341	
		흙막이공사비	–	–	–	–	309,656	
		비탈면보호공사	–	–	–	–	–	
		옹벽공사	501,010	–	–	–	–	
		석축공사	–	45,562	20,591	–	15,925	
		우 · 오수공사	1,888,263	212,623	96,090	724,365,412	146,571	
		공동구공사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60,749	27,454	–	114,130	
		도로포장공사	422,093	372,091	168,157	184,160,698	240,35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45,562	20,591	491,095,194	29,491	
		정화조시설공사	–	–	–	–	–	
		조경공사	5,953,951	2,490,729	1,125,618	5,402,047,144	662,370	
		부대시설공사	476,316	242,998	109,817	1,988,935,539	691,271	
	소 계		**12,345,410**	**6,059,761**	**2,738,551**	**10,632,210,968**	**2,949,108**	
	건 축	공통가설공사	5,968,633	3,873,559	1,750,554	2,455,475,974	984,586	
		가시설물공사	3,878,314	1,068,568	482,911	613,868,993	274,002	
		지정 및 기초공사	2,030,172	8,682,115	3,923,655	2,455,475,974	373,548	
		철골공사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72,492,876	28,918,119	13,068,790	34,382,802,532	5,809,896	
		용접공사	–	–	–	–	–	
		조적공사	2,404,134	934,997	422,547	1,682,001,042	266,478	
		미장공사	6,851,979	3,072,133	1,388,370	2,701,023,572	633,598	
		단열공사	779,408	400,713	181,092	1,080,409,428	126,563	
		방수 · 방습공사	3,130,215	1,068,568	482,911	1,461,008,204	310,138	
		목공사	2,518,280	1,936,780	875,277	4,002,425,838	413,675	
		가구공사	10,212,458	4,207,487	1,901,464	4,198,863,916	1,332,343	
		금속공사	3,457,927	1,068,568	482,911	1,817,052,221	431,393	
		지붕 및 홈통공사	815,197	133,571	60,364	773,474,932	136,359	
		창호공사	9,627,262	2,938,562	1,328,006	4,579,462,692	788,895	
		유리공사	3,012,098	868,212	392,366	1,117,241,568	269,114	
		타일공사	9,835,504	2,404,278	1,086,551	2,480,030,734	565,413	
		돌공사	4,022,620	1,001,783	452,729	1,571,504,623	304,893	
		도장공사	3,437,070	734,641	332,002	1,620,614,143	415,396	
		도배공사	4,501,255	868,212	392,366	1,534,672,484	359,130	
		수장공사	2,392,053	1,602,852	724,367	1,792,497,461	374,470	
		주방용구공사	3,941,587	934,997	422,547	2,455,475,974	1,024,466	
		잡공사	3,198,903	66,786	30,182	564,759,474	548,649	
	소 계		**158,507,944**	**66,785,501**	**30,181,962**	**75,340,141,779**	**15,743,002**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3,075,522	637,870	288,269	1,694,278,422	363,129	
		급탕설비공사	675,666	1,002,367	452,993	914,664,800	309,298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2,197,612	467,012	211,054	2,025,767,679	389,191	
		위생기구공사	4,243,809	2,540,088	1,147,927	2,553,695,013	509,431	
		승강기계공사	3,066,285	1,036,538	468,436	1,902,993,880	369,223	
		난방설비공사	3,165,719	797,337	360,336	2,627,359,292	522,192	
		가스설비공사	1,369,409	444,231	200,758	613,868,993	177,986	
		자동제어설비공사	154,803	136,686	61,772	257,824,977	146,526	
		특수설비공사	4,195,987	4,328,401	1,956,108	2,197,650,997	307,278	
	소 계		**22,144,812**	**11,390,530**	**5,147,653**	**14,788,104,053**	**3,094,254**	
	그밖의 공종	전기	13,604,778	5,062,458	2,287,846	4,910,951,949	2,595,117	
		정보통신	5,060,858	3,115,359	1,407,905	3,830,542,520	1,044,922	
		소방설비	10,038,953	3,407,424	1,539,896	3,449,943,744	983,051	
	소 계		**28,704,589**	**11,585,241**	**5,235,647**	**12,191,438,213**	**4,623,089**	
	그밖의 공사비	현장 관리비	5,282,976	7,665,683	3,464,305	6,138,689,936	3,987,200	
		이윤	3,344,921	7,244,070	3,273,768	3,683,213,962	3,093,517	
	소 계		**8,627,897**	**14,909,753**	**6,738,073**	**9,821,903,898**	**7,080,717**	
계			**230,330,652**	**110,730,786**	**50,041,886**	**243,638,129,141**	**33,490,170**	
간접공사비		설계비	1,650,000	990,000	440,000	2,091,636,448	363,000	
		감리비	3,624,730	2,924,634	1,271,093	2,186,710,832	674,027	
		일반분양시설 경비(M/H 건립비)	3,816,400	1,985,740	986,745	4,183,272,896	1,130,000	
		분담금 및 부담금	4,083,812	1,653,496	763,232	–	1,139,518	한전,가스,수도,오수,학교용지
		보상비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6,025,051	5,674,577	4,753,719,200	3,171,740	
계			**13,174,942**	**23,579,473**	**9,137,929**	**13,215,339,376**	**6,478,285**	
그밖의 비용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7,862,310	21,871,301	9,824,992	22,960,473,993	5,400,817	
합 계			**424,044,500**	**274,527,300**	**124,712,800**	**279,813,942,510**	**80,780,000**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건 설 사 명	감 리 자 명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SK건설 (A-31BL)	건 축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2,858,581,461
	전 기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87,288,566
	통 신	석우엔지니어링(주)	49,500,000
	소 방	한방유비스(주)	129,360,000
동양메이저/건설 (A-39BL)	건 축	(주)길종합건축사무소	1,966,792,126
	전 기	(주)제일종합ENG	589,765,422
	통 신	동도이엔씨	48,400,000
	소 방	동도이엔씨	260,700,000
동양메이저/건설 (A-26BL)	건 축	(주)에스디파트너스종합건축사무소	991,692,881
	전 기	동도이엔씨	158,400,000
	통 신	동도이엔씨	30,800,000
	소 방	동도이엔씨	90,200,000
한 양 (A-38BL)	건 축	(주)남산도시건축사사무소	1,744,734,840
	전 기	(주)21세기엔지니어링	507,468,342
	통 신	(주)신화에프이씨	24,200,000
	소 방	(주)신화에프이씨	183,260,000
반도건설 (A-33BL)	건 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	641,026,890
	전기, 통신, 소방	(주)건일엠이씨	33,000,000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건 설 사 명	보 증 서 번 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SK건설(A-31BL)	01282009-101-0002200	₩296,831,1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 까지
동양메이저/건설(A-39BL)	01282009-101-0002400	₩192,169,110,000	
동양메이저/건설(A-26BL)	01282009-101-0002300	₩87,298,960,000	
한 양(A-38BL)	01282009-101-0002500	₩195,843,200,000	
반도건설(A-33BL)	01292009-101-0001100	₩56,548,240,000원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 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건 설 사 명	시 행 자	시 공 자	설 계 자
SK건설(A-31BL)	KB부동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1348237)	SK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38805)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 서울시강남구-건축사사무소-253)
동양메이저/건설(A-39BL)	아시아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3543801)	동양메이저/건설 (법인등록번호 :110111-0005333)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무소 (등록번호 : 강남구-건축사사무소-548호)
동양메이저/건설(A-26BL)	한국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2196304)	동양메이저/건설 (법인등록번호 :110111-0005333)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무소 (등록번호 : 강남구-건축사사무소-548호)
한 양(A-38BL)	보성건설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전남-주택 2000-0007)	주식회사 한 양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인천 주택 1978-0001)	(주)남산도시건축사무소 (등록번호 : 중구-건축사사무소-65호)
반도건설(A-33BL)	(주)반도종합건설 (법인등록번호 : 135211-0022964)	(주)반도건설 (법인등록번호 : 180111-0624311) (주)반도종합건설 (법인등록번호 : 135211-002296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 (등록번호 : 강남구-건축사사무소-316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라
동시분양

청라를 움직이는 핵심프로젝트의 심장부!

- 국제업무타운, 중앙호수공원, 로봇랜드, 인천하이테크파크 등 청라 개발프로젝트의 핵심
- 남청라JCT(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청라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송도보다 빠른 서울접근성
- 국제업무타운의 웅장한 스카이라인, 광활한 바다를 비롯한 인천대교 등 탁월한 조망권

SK건설
www.skcn.co.kr
1577-9880

동양메이저/건설
www.tyapt.com
032-888-0000

한양
www.sujain.co.kr
1588-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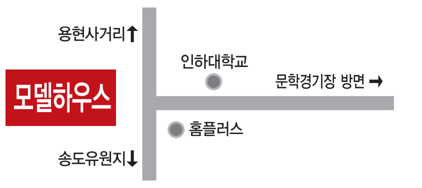BANDO 반도건설
www.ubora-cheongna.co.kr
032-888-1611